

심의위원 검토의견서

□ 안건명 : 2016~17 시민청 안내데스크 계약조건 심의

검토분야	검 토 의 견	비고
입찰 자격조건 등	<p>임금체불, 우수인력관리 등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등록 사업자로 제한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,</p> <p>안전사고 예방,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거리에 있는 수도권역으로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</p> <p>다만, 낙찰이 되었더라도 임금체불, 계약불이행 등 부정당한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확실히 하여 안내데스크 과업수행과 근로자 보호 및 교육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</p>	

2015. 12. 16.

심의위원 :

김경호 서명
김경호

심의위원 검토의견서

□ 안건명 : 2016~17 시민청 안내데스크용역 계약조건 심의

검토분야	검 토 의 견	비고
입찰 자격조건 등	<p>서울 시민을 위한 시민청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안내데스크 용역을 선정하는것에 대해 동의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자를 취득한 업체가 운영하는것에 동의함.</p> <p>용역 업체의 현장관리를 위해 본사가 서울 내에 위치하는 것이 옳다고 봄.</p>	

2015. 12. 16.

심의위원 : 
(서명)

심의위원 검토의견서

□ 안건명 : 2016~17 시민청 안내데스크용역 계약조건 심의

검토분야	검 토 의 견	비고
입찰 자격조건 등	<p>기존 안내데스크 운영에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아 계속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.</p> <p>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만큼 제한경쟁입찰법으로 하는 것이 옳고, 관리를 위해 회사는 서울 및 경기도권에 위치하고있는 곳이 옳다고 생각됨.</p> <p>인력파견의 업종인만큼 임금체불이력이 있는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법이 필요함.</p>	

2015. 12. 16.

심의위원 : 61 나미 

심의위원 검토의견서

□ 안건명 : 2016~17 시민청 안내데스크용역 계약조건 심의

검토분야	검 토 의 견	비고
입찰 자격조건 등	<p>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로 이루어지는 입찰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의 참가를 동의합니다.</p> <p>시민대상으로 운영되는 안내 서비스 인 만큼 전문적인 운영과 책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</p>	

2015. 12. 16.

심의위원 : 김재현 (서명)

심의위원 검토의견서

안건명 : 2016~17 시민청 안내데스크 계약조건 심의

검토분야	검 토 의 견	비고
입찰 자격조건 등	<p>본 과업은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면허·등록(근로자 파견사업)을 필히 득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며, 충분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여야 경험을 토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됨</p> <p>서울시청과 거리가 먼 수도권외의 지역업체가 낙찰 될 경우 응급상황과 업무처리의 자연이 예상되어 수도권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됨</p>	

2015. 12. 16.

심의위원 : 서일한 *서일한*